

2018. 9.3 제정
2019. 3.16 개정

「주거래하나 통장」 특약

제1조 약관의 적용

「주거래하나 통장」(이하 “이 예금” 이라 한다)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 기본약관」 및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 예금과목

이 예금의 과목은 「저축예금」으로 합니다.

제3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제4조 가입금액

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제한이 없습니다.

제5조 이자지급

- ① 이 예금의 이자는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매 영업일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금리를 적용 하며(휴일인 경우 직전영업일 고시금리), 최초 예금일(또는 원가일)로부터 원가일(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기간으로 보고, 아래 기준일에 셈하여 익일(이하 ‘원가일’)에 원금에 더합니다.
 - 이자계산 기준일 :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제3금요일
- ② 다른 예금에서 이 예금으로 전환 또는 이 예금에서 다른 예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일부터 전환후 예금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제6조 수수료우대서비스

- ① 이 예금의 가입고객이 아래의 항목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충족월 다음달에 수수료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예금을 통한 거래에 한 하여 제공)
 - 1. 주거래하나 우대 : 이 예금에 주거래이체실적^(주1) 1가지 항목 충족 시, 수수료우대 I (횟수제한없음)제공
 - 2. 주거래플러스 우대 : 이 예금에 주거래이체실적^(주1) 2가지 항목 이상 충족 시, 수수료우대 I (횟수제한없음) 및 수수료우대 II 총합 월10회 제공
- (주1) 주거래이체실적 : 이 예금에서 실제 이체된 달의 실적 인정

이체실적 항목	실적 인정기준
급여 입금	① 급여를 의미하는 문구가 포함된 적요*로 입금된 금액이 월 50만원 이상인 경우 (ex. *급여, 월급, 봉급, 연봉, 상여, 성과, 보너스 , SALARY, PAY 등/ 등록직장명) ② 회사에 의한 ‘급여코드’로 입금된 금액이 월 50만원 이상인 경우 ③ 손님이 ‘급여일’을 지정(등록)하고, 해당일 포함 전후 1영업일 사이에 건당 50만 원 이상 입금된 경우 ※ 본인거래 및 비급여성(카드대금, 보험료 등)거래, 자동화기기 입금분, 가지급 등 비급여성 적요는 제외 ※ 직장명 또는 급여일 등록 이후 입금 건부터 적용

연금 입금	4대 공적연금(국민, 공무원, 군인, 사학), 기초(노령)연금, 보훈연금, 산재보험보험금 여, 하나은행에서 가입한 개인연금(주택연금, 연금신탁, 연금보험, 연금펀드) 기타연금(고객 지정 연금수급일 전후 1영업일에 대량이체방식으로 건당 20만원이상 입금되고 적요에 '연금' 또는 '보험사명'이 기재된 연금)
카드 가맹점대금 입금	하나카드/BC카드 가맹점 대금
아파트관리비 출금	자동이체방식으로 이체되는 아파트관리비
카드 결제대금 출금	하나카드/현대카드의 결제대금 월 5만원 이상 (신용,체크)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하나은행의 본인명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
공과금 출금 (2건 이상)	도시가스요금, 전기료, 통신요금, 보험료 등 지로/CMS/편뱅킹으로 이체 (단, 타행카드 결제대금 제외)

**3. 『하나머니』우대 : 하나금융그룹의 『하나머니』 회원인 경우 수수료우대 I 총합 월10회 제공
(수수료우대 I)**

- 하나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후 현금인출수수료 및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 하나은행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폰뱅킹(ARS)을 통한 타행이체수수료 면제
- 납부자자동이체 및 타행자동이체 수수료 면제

(수수료우대 II)

- 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 인출수수료 면제(주2)
- 영업점 창구를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주2) 타행은 CD기 공동망 참여 금융회사로, 타행 점내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한하며, 은행 외부에
설치된 타행 제휴CD기 및 한컴/효성/나이스 등 VAN사 CD기에서 출금하는 경우는 수수료 면
제가 제공되지 않음.

② 이 예금 신규 가입후 다음달까지는 요건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수수료우대 I 를 총합 월10회 제공합니다.
단, 가입월에 제6조 제1항의 수수료우대서비스 요건 충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후 다음달부터
수수료우대 서비스를 적용합니다.

③ 다른 수수료면제통장에서 이 예금으로 전환 시, 전환하는 달의 수수료면제횟수는 기존 상품의 수수료면제
잔여횟수를 적용하고, 익월부터 이 예금의 수수료우대서비스 요건에 따른 면제혜택을 제공합니다.

제7조 상품전환

저축예금인 경우, 다른 예금에서 이 예금으로 전환 또는 이 예금에서 다른 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부칙

1. 이 특약은 기존 가입자 포함 2022년 03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2. 이 특약은 기존 가입자 포함 2025년 07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 이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